

# 2006년 축산인이 함께 풀어야 할 6대 축산현안

##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 1. 한·미 FTA 협상 무엇이 문제인가?

축산업계가 한·미 FTA 협상을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미국과의 FTA는 농업부문의 희생을 기반으로 추진되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FTA에는 우리나라가 추진해 온 여느 FTA(한·칠레, 한·아세안 등)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막대한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특히 미국과 FTA가 체결될 경우 가장 큰 피해 대상으로 축산업이 꼽히고 있다.

#### 1) 4대 전제조건 : 굴욕 외교의 표본

미국과의 FTA는 절차상의 문제로 국민의 신



농민과 시민단체가 한미FTA 협상중단을 촉구하며 반대시위를 하고 있다.

뢰를 받기도 어렵다. 이미 우리 정부는 미국이 내세운 한·미 FTA 협상 4대 전제 조건(미국산 쇠고기 수입, 스크린쿼터 축소,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완화, 의약품 약가산정기준 개선)을 수용한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광우병(BSE) 미국산 쇠고기의 재수입을 위해 열린 첫 번째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미국 압력에 굴복해 외교관례를 깨는 연장 협상까지 벌여가며 수입위생조건에 합의했다.

이는 한·미 FTA 협상 추진이 굴욕 외교의 표본이며,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2) 협상 일정 촉박·졸속 협상 불가피

한·미 FTA는 미국의 일방적인 일정에 맞춰 진행됨으로써 협상 일정이 매우 짧은 등 졸속 협상의 우려가 높다. 2월 2일과 6월 27일 열린 한·미 FTA 1, 2차 공청회'는 이 같은 정부의 무리한 일정 추진을 통한 졸속 협상의 우려를 현실화시켜 주었다.

법적으로 필수 진행과정인 1차 공청회가 농축산업계의 반발로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청회 무산 하루도 지나지 않아 다음날 미국에서 한·미 FTA협상 개시 선언을 발표하는 초강경수를 구사했다. 2차 공청회가 또다시 무산됐음에도 미국에서의 2차 협상을 진행하는 무리

한 운영을 하고 있다.

국민의 여론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가장 피해가 극심하다는 농업과 축산업계와는 단 한번의 협의도 없이 “공청회를 개최했다”는 요식행위만을 갖추고 협상을 진행한 것이다.

미국 의회가 부시 행정부에 위임한 무역촉진 권한(TPA)의 종료시점이 2007년 6월말이기 때문이다.

이는 한·미 FTA 협상을 2006년 6월 5일부터 2007년 3월말까지 약 7개월 만에 어떠한 수단을 쓰더라도 끝마쳐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한·미 FTA 체결시 축산분야 피해(닭고기)

닭고기에 부과되는 20% 관세가 철폐되면 수입가격은 16.7% 하락하게 되고 국내 생산감소액은 평균 1,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관세철폐가 5년에 걸쳐 매년 4% 포인트씩 감축되는 경우 생산 감소액은 연평균 770억원으로 즉시 철폐에 비해 440억원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 2. 한·미 FTA 협상과 축산업계 대응

축산단체들이 한·미 FTA 협상을 반대하는 이유는 축산업 붕괴에 대한 우려를 넘어서 정부의 외교행태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불신감 때문이다.

시간 제약에 쫓겨 사전에 내줄 것 내주고 최대 피해 당사자인 축산인과는 단 한 번의 사전 협의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한·미 FTA 협상이다.

### 1) 한·미 FTA 농축수산물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지난 3월 9일 농축산업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한·미 FTA 농축수산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농대위)’가 출범했다. 농대위는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공동으로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미국 원정시위대 파견 등 한·미 FTA 협상에 대한 농수축산업계의 반대 입장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 2)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미 FTA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한우, 양돈, 낙농, 양계 등 축산업계도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한·미 FTA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한·미 FTA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3) 협상 저지 100만인 쫓겨 대회, 기금모금 운동

한·미 FTA 협상은 이제 반드시 막아내야만 하는 과제로 등장한 만큼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는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생존을 위해 사활을 걸고 저지에 나설 것이다.

9월 5일 한·미 FTA 저지 3차 협상저지 미국 투쟁원정파견 및 한·미 FTA 3차 협상저지 지역별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또한 ‘12,014,277+1명 범국민 서명운동’ 및 11월 ‘한·미 FTA 저지 100만인 대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자체적으로도 도별 간담회 및 집회와 기금모금 운동 등을 펼쳐 나가고 있다.

➔ 식품안전처 신설

1. 식품안전처 신설의 문제점

축산식품은 농장의 질병관리 단계부터 도축·가공·유통단계까지 ‘농장부터 식탁까지(Farm to Table)’ 일관되게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축산물은 원료 생산을 담당하는 농림부가 위생관리업무를 담당했을 때와 과거 유통단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가 위생관리업무를 담당했을 때의 소비자보호가 차이를 보였던 것도 바로 ‘농장부터 식탁까지(Farm to Table)’의 일관된 관리체계가 유지되느냐에 있었다.

1) 식품위생안전 행정체계 대혼란

정부는 학교급식 사건 등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식품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조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기존 조직으로도 관리감독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부재를 핑계 삼고 있는 것이다.



윤상의 회장과 축협조합장들이 조일현 의원을 찾아 식품안전처 신설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덴마크, 스웨덴, 호주 등 많은 선진국들이 식품행정 체계를 생산 담당 부서인 농림부에서 일괄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식품안전처의 신설은 식품위생안전 행정체계를 완전히 해체하는 것으로 이를 강행할 경우 대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2) 축산식품 생산단계부터 일괄관리

축산식품의 경우 품질 제고와 안전성 확보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다.

생산단계에서부터 가축질병의 방역, 항생제·농약·중금속 차단은 물론 집유, 도축, 가공 등 전 과정을 일괄적으로 집중관리해야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식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

특히 광우병과 같은 인수공통 전염병은 식품안전에 중요한 위해요소로 작용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육단계부터 수의사에 의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식품안전처의 설립은 일괄적으로 다뤄져야 할 생산부문이 소홀해 질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생산단계의 안전성 문제까지 해결하기 어렵게 된다.

생산이력추적시스템, HACCP 등이 정착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식품 안전관리를 다른 부처로 일원화 할 경우 혼란만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

3) 농장부터 식탁까지 수직 일원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도 식품안전 관리에 대해 생산단계부터의 일괄 관리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국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부처의 신설보다는 현재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사소 등 정부 산하조직의 통합을 통해 '농식품위생안전청'을 설립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더 나아가서 농림부를 '농업농촌식품부'로 변경하고 농식품에 대한 관리를 농림부에서 일원화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농림부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식품안전 전문가 1,150명을 활용하면 농장부터 식탁까지 수직적으로 일원화된 관리체계가 가능하다.

## 2.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및 축산업계의 대응

### 1) '식품안전관리추진위원회' 결성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식품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한 행정체계 개편에 대해 효율성과 식품안전성, 농축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전반적인 타당성을 검토키 위해 '식품안전관리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이 위원회는 소비자단체·관련학계·수의축산관련단체·식품관련협회 등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축산물위생관리업무는 현행대로 원료 생산부터 가공·유통단계까지 농림부에서 일관성 있게 관리해야 소비자 보호와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위원회는 이를 소비자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정부와 국회에 전달해 놓은 상태이다.

### 2) 식품안전관리추진위원회의 식품위생업무 개편 의견안

-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생산 관련부처로 일원화
- 농림부를 농업농촌식품부로 개편하고 산하의 농관원, 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소를 통합하여 (가칭)식품안전청을 설립
- 식약청의 식품업무를 신설되는 식품안전청으로 이관

| 구분   | 1차 생산(품) |    | 2차 생산(품) |    | 유통<br>(보관/운반 등) | 소비<br>(백화점, 식당 등) |
|------|----------|----|----------|----|-----------------|-------------------|
|      | 재배/사육 등  | 수입 | 국내가공     | 수입 |                 |                   |
| 농산식품 | 농림부      |    | 식약청      |    |                 |                   |
| 축산식품 | 농림부      |    |          |    |                 | 식약청               |



| 구분     | 1차 생산(품) |    | 2차 생산(품) |    | 유통<br>(보관/운반 등) | 소비<br>(백화점, 식당 등) |
|--------|----------|----|----------|----|-----------------|-------------------|
|        | 재배/사육 등  | 수입 | 국내가공     | 수입 |                 |                   |
| 농·축산식품 | 농업농촌식품부  |    |          |    |                 |                   |

➔ 농지법 개정

1. 농지법의 문제점

축산이 농업이라면 농지범위에 축사개념이 포함돼야 한다. 축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자연순환형농업 실현으로 안정적인 사육기반 확충을 위해선 농지법에 축사진입이 허용되도록 명문화돼야 한다.

1) 자연순환농업의 실현

농지법 개정은 자연순환농업을 실현하고 유희경작지 활용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현재의 축산업은 현대적 시설과 함께 자연순환농업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있다.

과거의 축사를 일반 건축물과 동일시하는 개념에서의 축산업에 대한 인식이 농지법 개정을 더디게 하고 있다.

축사도 필수 농업시설로서 농지에 들어서면 경종농가와 축산농가들이 함께하는 자연순환농업이 보다 빠른 시일내에 실현될 것이다.

2) 경쟁력 있는 축산경영

농지에 들어설 수 있는 농업시설에 축사가 포함될 경우 축산농가들의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농지에서 당당하게 농장과 목장을 경영할 수 있다.

도시팽창과 그에 따르는 민원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

개방화 시대에 경쟁력 있는 축산경영이 비

로소 가능해지게 된다.

3) 축사부지 확보 시급

농지내 축사진입이 허용되면 가축분뇨·폐수·악취 등으로 농촌경관이 훼손된다는 우려는 환경친화적인 축사표준 설계도 등 축산업 모델을 개발 보급으로 해소될 수 있다.

농지범위에 축사개념을 포함시키게 되면 좀더 계획적으로 축사배치가 가능해 자연순환농업 실현과 유희 경작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농업진흥지역 내에도 축사를 신축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

2. 농지법 개정을 위한 주요 활동

- 조일현 의원(열린우리당, 강원 홍천·횡성)의 주도로 농지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축산관련 학회 등과 공동으로 농지법 개정에 따른 자연순환농업, 축분활용방법 등 다양한 대책 마련
- 축산관련단체협의회에서는 관련학회 등과 자연순환농업의 방향, 축분활용 방법 등 대책마련과 대정부 및 국회 설득작업
- 경종농가 등 농업관련단체, 전국 지자체 등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축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주력

※ 2006. 1. 1 농지법시행령 개정사항 명시  
토록 함. 농지전용 신고면적을 전축종 1ha→3ha로 조정

## 도축세 폐지

### 1. 도축세의 문제점

도축세는 소와 돼지를 도살할 경우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축산물 수출 국가들에서는 부과하지 않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부과되어 한우농가와 양돈농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특히 축산농가들이 소득발생시 종합소득세를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도로 도축세를 징수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 1) 일반사업 재원으로 사용돼

지방세 가운데 도축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0.2% 내외에 불과하다. 세수감소에 따른 시·군의 재정적 피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축세는 보통세로 분류돼 있어 도축장 소재지 지자체의 일반사업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실상 축산농가가 납부함에도 축산업에 재투자되지 않고 있다.

#### 2) 도축장의 환경개선

도축세는 1976년 환경적 재처리비용 등 열



악한 도축장 시설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부과됐다.

현재의 도축장은 환경 기초시설, 가축분뇨의 처리 등으로 도축으로 인한 외부 주변경제 활동의 어려움은 상당히 축소됐다. 도축세의 존치 의미를 찾아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도축세를 부과하는 근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기여하는 명목으로 도축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 가축분뇨 자원화

### 1. 가축분뇨 자원화의 문제점

가축분뇨는 환경친화적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가장 큰 자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오인돼 왔다. 환경부와 농림부가 입법예고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가축분뇨에 대한 인식전환과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1) 가축분뇨에 대한 인식 전환

가축분뇨는 산성화되고 황폐해진 농토를 살리고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최고의 자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가축분뇨는 '축산폐수'라는 오명하에 산업폐기물 등과 함께 폐기물로 처리돼 왔으며,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돼 왔다.

이제는 가축분뇨를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살리고, 자연순환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소중한 자원으로 인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축산농가는 양질의 퇴·액비를 생산하고 경종농가는 친환경 농업을 실현함으로써 고부가가치 한국농업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나 관련기관, 단체는 축산농가와 경종농가의 연계와 양질의 퇴·액비 공급 시스템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그동안 정부는 가축분뇨 처리를 수질오염 방지에 주안점을 두고 정화해 하천 등으로 방류하는 정화위주의 법제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같이 가축분뇨 처리에 친환경 개념을 강화해 퇴비, 액비 등으로 자원화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중 가축분뇨에 관해 별도로 분리해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법률에서는 그동안 사용됐던 ‘축산폐수’의 표기를 ‘가축분뇨’로 바꾸는 등 환경과 조화로운 지속가능한 축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크게 문제시되고 있는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 등 축산분뇨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동 법률의 빠른 시행이 필요하다. 또한 동 법률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의 적절한 제정, 자원화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 편성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3) 경종농가와 연계할 수 있는 유통체계

축산농가들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자연순환농업에 기반이 되는 가축분뇨 자원화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이제 가축분뇨 퇴·액비의 효율적인 이용과 실질적인 활용을 위해서 축산농가와 경종농가를 연계할 수 있는 확실한 유통체계가 필요하다.

지역 농축협이나 별도의 민간 수거, 관리센터가 축산농가와 경종농가의 고리역할을 담당해 가축분뇨 공동처리의 개념 도입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그동안 많은 자금과 노력이 소요됐지만 축산농가의 개별 분뇨처리는 한계성을 나타내고 있다.

세재개선

1.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의 문제점

축산업은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 돼지, 닭 등 가축 사육과 축산물 생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축사는 가축 사육과 축산물 생산이 목적

기반시설 부담금이란 지난 7월 12일부터 시행된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에 의한 것으로 200㎡(약 60평) 이상 건축물의 초과면적에 ㎡당 최대 약 5만8천원을 건물주가 부담해야 하는 제도이다.

난개발을 억제하고 개발시 필연적으로 소요되는 상하수도과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개발 주체가 부담토록 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축사는 제외되어야 한다.

2) 경영효율 및 동물복지 증대

최근 축산업은 생산효율 증대와 동물복지 실

현 등을 위해 적정 사육면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또 자연순환농업 실현을 위해 분뇨처리 시설을 확보해야 하고 내년부터 농림부 장관 고시에 따라 마리당 적정 사육면적을 현재 관행보다 넓혀야 하는 등 축사 및 부속시설 증축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축산농가에게 기반시설부담금과 같은 형태로 과도한 세금을 물린다면 이 같은 투자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농가들의 투자의욕을 위축시켜 개방화 시대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소지가 높다.

### 3) 부과대상서 축사 제외돼야

축사 및 분뇨처리 시설과 착유장 등 부속시설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이 면제된다면 이 같은 시대 흐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잘 아시다시피 농장이나 목장의 경쟁력은 적정 규모 확보에서부터 시작된다.

DDA, FTA 등 농업의 미래를 위협하는 개방농정에서 축산업이 살아남기 위해 축사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돼야 마땅하다. 🐄

